

# 방화 그 증거와의 싸움

## 방화

방화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연소 목적물을 소훼하고 물적·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로,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부 부작위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방화는 실화로 발생되는 화재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고의적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사회 제도에서 묻혀 지나가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업무 한계 속에 밀려나 있어서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범인을 단정하여 단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방화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원한이나 보복 등의 원초적 이유는 물론이고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방화도 빈번하다는 것과, 법정에서는 방화 범죄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예 초동수사에서 방화의 단서를 찾지 못하여 수사 착수에도 이르지 못하는 일들은 안타깝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 증거의 가치

방화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증거의 가치는 범죄를 입증하고 범죄와 관련된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범행의 주체가 되는 범인을 용의선상에 두어 수사를 하게 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 물증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는 더욱 바람직하다. 보험금을 노리고 행하는 방화 범죄의 경우에 방화의 개연성 여부를 시사하는 증거의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의 성격을 방화로 보는지 여부가 수사의 개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수사가 개시되어야만 방화범을 특정하거나 검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보험사에서도 방화 범죄의 색출과 예방에 많은 힘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던 자체 조사를 하던 방화범죄의 개연성을 나타내 주는 증거의 발굴은 1차 조사자들의 몫이다. 그 증거는 현장의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보험 전력, 가입 시기, 가입액수의 보편성 등)도 방화 가능성은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가치를 부여받을 때가 많다. 이를 정보는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고, 보험사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이다.



### 증거의 효력

증거의 가치는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용의자의 거동을 증명하는 증거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결정하는 데 무의미하거나 부족한 것이면 용의자를 축소 또는 검거하는 가치로 마감되고 그 이후의 효력은 없어질 수 있다. 증거의 최종 효력은 범인의 유무죄를 단정하는 법정에서 얼마나 유효한가 하는 데 달렸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효력에 대하여는 함부로 판단하기 힘들다.

일단 획득된 증거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도록 가치 부여를 하고 최종 재판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효력은 해당 재판장의 선택이나 때로는 배심원의 선택에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 수집자나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수집 관리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증거로서의 유효성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적 증거의 효력으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채집과 이동 보관에서의 투명성(Chain of custody)이다. 이는 수사기관 등 법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도 법정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니려 한다면 증거의 취급과정이 객관적이어서 어디서 누구도 증거의 변질이나 위조 등이 없었음을 스스로 나타내주어야 한다. 어떤 단계에서도 설명되지 못하는 암흑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증거물의 관리

일부 형사사건으로 시작된 방화사건 증거물들이, 소유 권한이 있는 자들이 포기하거나 절차상 오해로 인해 관리를 하지 않아 민사재판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해 밭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다. 형사사건에서 민사사건으로 옮겨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어 당사자들이 증거를 쟁기지 못하면 민사재판까지 증거를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형사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에서도 수동적인 증거물 관리보다는 국민들의 권리 차원에서 증거물의 최종 도착지가 당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래도 보험사나 개인은 사건 초기에 특정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것이 어떻게 재판으로 비화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쟁기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로서는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닌 만큼 사건이 종결될 때에는 향후 가능한 상황의 설명과 함께 증거물을 인계하여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침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폐기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맡겨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인 고리로 투명하게 연결되어 객관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방화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원한이나 보복 등의 원초적 이유는 물론이고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방화도 빈번하다는 것과 법정에서는 방화 범죄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 \* 법정 다툼과 판결

### 가. 자백의 증거

자백은 사건 관련 피의자가 자기 스스로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다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증거로서의 효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헌법 12조 7항에서 자백에 의한 증거로서 처벌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10조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백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근래 주목되는 방화사건에서 사건 초기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피의자가 며칠 후부터 처음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묵도할 수 있다. 그 시점이 대부분 법률적 조력을 받는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양심을 탓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기소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방화사건에서 자백이 어느 정도 증거의 효력을 보강해줄 수 있는 경우는 자백을 한 피의자 이외는 다른 사람이 방화를 한 것으로 일말의 의심이 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 자백의 내용이 피의자가 범행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피의자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에 해당되는 때 등이 있을 수 있다.

200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전년 7월 잠실의 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층의 고시원 등에 있던 거주자 중 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방화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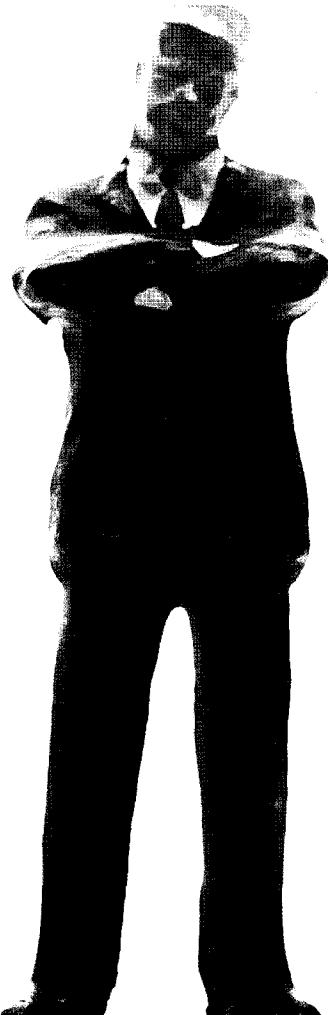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고시원 화재가 인위적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고 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간접 증거만 있고 정씨 또한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나. 행위의 증거

방화사건의 직접 범인임이 지목된다는 것은 방화 현장에 범인이 존재해야 하고 그 현장에서 범인의 착화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상황일 것이다. 물론 자연 착화나 대리 착화 등의 응용적 예는 접어둔 상황에서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방화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무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유죄라고 단언할 만한 증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범인의 직접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

2006년 7월 대구지법은 내연녀와 다툼 후 내연녀 집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피고인이 방화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을 내겠다고 말한 것과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화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유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방화범 구성의 직접 행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다. 또한 위에 언급된 잠실 고시원 화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무죄 이유에 대하여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화방법 또한 명백하게 특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존속살해와 혼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사흘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인정했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씨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집에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 다. 무죄와 유죄

반면 2007년도 6월 광주지법 민사부에서는 방화사건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형사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방화사건에 대하여 손해보험사가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화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윤○○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 내용에는 “피고가 방화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방화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의미이지 방화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형사재판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죄임을 밝히는 90% 이상의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민사재판은 우월한 증거에 의한 51%의 입증만 있어도 된다.”며 “윤씨의 경우 제출된 여러 증거들로 볼 때 방화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 방화 조사에서의 증거 획득

누군가 실수로 불을 내는 당사자로서 목격하거나 기구 시설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직접 관찰되지 않는 한 어떤 화재사건에서도 조사 전 방화 혐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방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실화로 단정하기 위한 요건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화혐의가 내재된 화재사건에 관여하는 조사기관이 누가 되든지 방화 의심에 대하여는 자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 주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원인 조사에서 실화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를 임의로 제외하는 조사자는 화재조사자의 자격이 의심되는 경우다. 물론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방화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과  
무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유죄라고 단언할 만한 증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증거는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니만큼 쉽게 방화 여부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 방화 현장에서 증거물 수집

#### 가. 오염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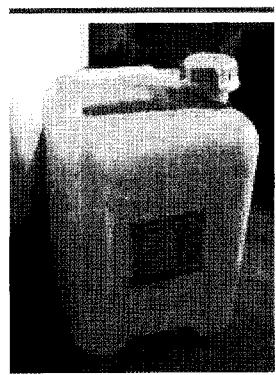
- 현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한다.
- 각 지점마다 상호 오염이 안 되도록 한 곳 채취 후 비닐장갑이나 신발 보호 캡 등을 1회용으로 매번 갈아준다.

#### 나. 증거를 기록한다.

- 그림, 계측, 사진 등을 통해 물품을 이동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 객관성을 위해 입회인을 두어도 좋다.
- 누가 수집하고, 누가 보관하며, 어떻게 이송되는지 기록한다.

#### 다. 시료를 수집한다.

- 발화지점이나 냄새가 나는 부분, 검지기로 반응되는 곳을 택한다.
- 흡수력이 있는 재질(의류, 종이)을 선택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대상물이 마룻바닥과 같이 흡수력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이음매나 갈라진 틈 밑면을 채취한다.
- 주변에서 현장에 뿌려지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용기도 유력한 용의점을 두고 찾아야 한다(플라스틱, 금속). ([\(사진 1\) 참조](#))



**(사진 1)** 연소부위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인화물질 용기

#### 라. 시료를 포장하여 보관한다.

- 휘발되지 않도록 공기 기밀을 유지하고, 담는 용기는 보통 2ℓ들이 폐인트 빈 용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2/3를 채운다. ([\(사진 2\) 참조](#))
- 합성수지백은 증거물에 따라 찢어질 염려가 있고, 완벽한 기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개방된 비닐봉지는 더욱 금물이다.
- 인화성 액체의 경우는 태플론 뚜껑을 가진 유리병에 포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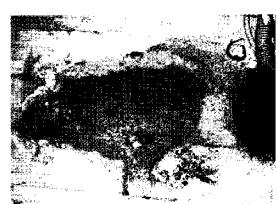


**(사진 2)** 인화물질 채취용으로 이용되는 폐인트 빈통(좌)과 분석 실험을 위해 가스를 채집(우)하는 형태  
〈Forensic Science by Richard Saferstein, Prentice Hall, 2008〉

#### 마. 필요한 경우 비교 샘플을 취득한다.

- 채취 대상물이 접착제와 같은 유기 용매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 물건을 채취할 때는 의심되는 지역의 물질을 수거하되, 뿌려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곳의 시료도 비교품으로 채취하여 실험자가 원래 존재물과 외부 용매의 차이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진 3\) 참조](#))

방화를 성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화재현장은 범죄현장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사진 3)** 접착제가 포함된 마루의 인화물질 투여 형태